

서울고등법원(춘천) 2014. 12. 24 선고 2014나156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 청구]

재판경과

서울고등법원(춘천) 2014. 12. 24 선고 2014나1565 판결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4. 6. 12 선고 2013가합1002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A종친회

피고, 항소인 1. D

2. E

변론 종결 2014. 10. 29.

판결 선고 2014. 12. 24.

제1심판결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4. 6. 12. 선고 2013가합1002 판결

주문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N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원고에게, 원주시 ○ 임야 197,452㎡ 중 각 10분의 1 지분에 관하여, 피고 D은 2013. 7. 4.자 명의신탁 해지, 피고 E은 2013. 8. 16.자 명의신탁 해지를 각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10,367,850원씩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2. 1. 27.부터 2014. 1. 15.자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부분을 송달받은 날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로 셈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의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하여 우리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것을 빼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추가 부분

가. 피고들은 원고 종중이 실체가 없고 가사 실체가 있더라도 그 형성 시기는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 이후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12호증의 1, 2, 갑 제13호증의 1, 2, 갑 제19, 20, 22, 23, 25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L, V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고 종중이 1979년경 비용을 마련하여 H 묘소의 비석을 건립하고, 1980년경에는 족보를 제작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의 지적도를 발급받는 등 활동을 벌인 사실, 이미 1963년경 그 소유인 강원 횡성군 W 토지를 종원 X, Y, Z의 공유로 명의신탁하고 1968년경 원주시 AA 토지를 종원 AB, AC, Y, Z의 공유로 명의신탁한 적도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들을 종합하면 원고 종중은 적어도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1983년경 이전부터 종중으로서 유기적 실체를 갖추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갑 제10, 11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V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망 K는 비록 원고 종중의 종원은 아니지만 종중 업무를 맡아 처리하는 등 원고 종중과 밀접한 관계에 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당심 감정인 AD의 감정결과에 따르면 1992. 1. 10.자 종중 결의서(갑 제11호증)에 결의자로 적혀 있는 'K' 옆의 서명은 망 K의 자필이 아닌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종중원이 아닌 망 K의 기명이 있는 사실 자체가 그와 원고 종중 사이의 밀접한 관계를 보여준다], 갑 제18호증의 기재 및 위 감정결과에 의하면 피고 D이 여러 해 전부터 원고 종중의 별초에 참여하였으며 2008년도에는 이에 대한 대가로 원고 종중으로부터 종원들과 같이 3만 원을 수령하면서 직접 수령인란에 자필로 서명하기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여기에 특히 망 K와 함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의 지분을 5분의 1씩 취득한 4명이 모두 원고 종중의 종원인 것을 빼고는 공통점이 없는 점, 피고들이 주장하는 망 K 명의의 지분 취득 경위는 그 개연성이 극히 희박하여 납득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 종중이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의 소유권보존등기 명의를 망 K에게 신탁하였음을 어렵지 않게 추인할 수 있다.

3. 결론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패소한 피고들이 전부 부담하게 한다.

재판장판사심준보

판사김경태

판사유의렴